

강원관광대학 교무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6조에 의해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구성 및 임무와 학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07.6.29>

제 2 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강원관광대학 교무위원회라 칭한다.

제 3 조 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학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행정지원처장, 산학협력단장, 정보지원센터장, 각학과장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학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

③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5 조 (심의사항) 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6.29>
2. 편제 또는 학과 및 지원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졸업,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07.6.29>
5.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
6.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
7. <삭제 2007.6.29>
8.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6.29>
9. 기타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<개정 2007.6.29>

제 6 조 (전문위원 위촉) 의장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명을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

제 7 조 (업무관리) 본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, 필요에 따라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위원회의 규정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본 위원회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한 교무위원회는 이 규정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위원회의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위원회의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